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57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규남, 김성준, 김용일, 남창진, 문성호, 박강산, 박승진, 박영한, 박철성, 소영철, 유정인, 윤종복, 이영실, 이용균, 이종태, 임규호, 임종국, 전병주, 정준호, 최재란, 홍국표 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인사청문회와 관련, 국회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,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출자출연법 등에서 기관장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부재하였음
- 최근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2(인사청문회)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 신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조례 위임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부시장, 지방공사의 사장, 지방공단의 이사장, 출자·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근거를 마련함 (안 제5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47조의2(인사청문회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사항 기재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6조(인사청문회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.

1.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
3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기관장

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6조(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한다. 다만,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② “산하기관장”이라 함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으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.</p> <p>③ 의장은 제1항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회가 폐회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56조(인사청문회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3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기관장 <p>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